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복무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대상)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의 복무평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수사처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처검사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복무평정 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무평정을 할 수 있다.

제3조(평정자) 처장은 차장으로 하여금 수사처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수사처검사의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업무능력·리더십 및 책임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처장이 정한다.

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수사처검사의 근무 자세,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③ 복무평정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부장검사가 아닌 검사에 대해서는 소속 수사부서의 부서장 의견을 참고하여 평정한다.

④ 복무평정을 위하여 평정 대상 수사처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부장검사(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 차장

2. 제1호에 따른 부장검사(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외의 검사 : 소속 수사부서의 부서장

제6조(평정회의) ① 수사처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② 평정회의에는 처장,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수사처검사에 대해 제4조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7조(평정시기) 복무평정은 매년 2회 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제8조(다면평가의 실시) 처장은 필요시 제2조제1항에 따른 복무평정 대상을 대상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평정자료의 보관) 처장은 복무평정 결과를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10조(평정결과의 비공개 등) ① 제11조에 따라 복무평정 등급을 본인에게 고지하는 외에 복무평정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처검사에 대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처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인사관리 시스템의 개선 등을 위한 범위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다.

② 복무평정 결과는 인사업무를 위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복무평정 등급의 고지)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제14조에 따라 연임희망원 또는 연임불희망원을 제출해야 하는 수사처검사에게 본인의 복무평정 등급을 알려줄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복무평정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